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이강일 · 박상혁 · 강준현
민병덕 · 손명수 · 박민규
한민수 · 양부남 · 김용만
장종태 · 김현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이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 법과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.

한편,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72호)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 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제110조,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

의7까지,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6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17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6제3항 후단 중 “제108조제6호”를 “제108조제6호, 제110조,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, 제11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의6(회사채등 유동화신탁) ①·② (생략)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 채등의 취득·보유·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「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」 제30조부터 제33조 까지, 제40조, 제61조, 제63조 (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 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는 임직원에게 한정한다), 제10 3조제3항, <u>제108조제6호</u> , 제114 조,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,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. ④ ~ ⑦ (생략)	제23조의6(회사채등 유동화신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08조제6호, 제110</u> <u>조,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</u> <u>까지, 제111조제2항</u> ----- ----- ④ ~ ⑦ (현행과 같음)